

분류기호	문서번호	도	도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 10. 5. ③. 1.	방법	직접체결
수신처 보존기간	3년	파장	국장
시행일자	87. 7. 7.	기안용지	
보조 주 기 관	880-28014-716 880-28014-716	(전화: 731-6312)	시행상 특별취급
기안책임자	이 나 용	협 조 기 관	문서통계 검열 87. 7. 7 통제판
경유 수신처 참조	수신처 참조 산업과 28	발송일 1987. 7. 7 서울특별시	발송일 1987. 7. 7 서울특별시
내부	880-28014-1418 (87. 6. 30)의 관련일 1. 위 통 88014-1418 (87. 6. 30)의 관련일 2. 위 관련번호로 별첨과 같이 880-28014-1418 (87. 6. 30)의 연락처 4. 업운영 모령 개정고시 (상공부고지 제 87-18호)가 4월 1일부터 적용하여 통사령 시행에 속한 일로부터 적용 정부: 상공부 고지 제 87-18 호 1부 풀 수신처: 서구 1-19		
072			

대한민국
상공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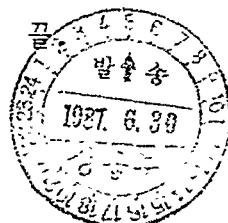
유통 28014 1418 (503-9456) 1987. 6. 30.

수신수신처 참조

제목 소매상의 연쇄화사업 운영요령 개정고시

상공부 고시 제87 - 18호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동 사업시행에
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상공부 고시 제87 - 18호 1부.



접수일자 기	1987. 7. 2.	결재 (공람)	국장 라방	1
처음	4174	2123		

우선공람
각국에 시포로라 합니다.

상공부장관

산업정책국장 결재

수신처: 나, 국세청장, 한국수퍼체인협회, 전국중소상인연쇄점협회,

한국공인회계사회

접수일자 기	1987. 7. 2.	결재 (공람)		
처음	4172			

상공부 고시 제87-18호

도. 소매업진흥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 고시
제87-8호(소매상의 연쇄화사업 운영요령) 중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한다.

1987. 7. 6.

상 공 부 장 관

* 다 음 *

제1조 중 "시장법 제14조,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"를
"도. 소매업진흥법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5조 제2항에서"로 한다.

제14조 제1항 제4호 중 "위반하여" 다음에 "법 제23조의 규정에
의한"을 추가한다.

별표 1 제2호 나목 적격기준 중 "시장법"을 "법"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을 각각 별첨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1987. 7. 6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5호 서식]

제 호

연쇄화사업자 지정서

사업체명:

소재지:

대표자:

사업의 종류:

지정년월일:

사업지역:

지정조건:

도.소매업진흥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
같이 귀사를 연쇄화사업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지정서를
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시 도 지 사 인

[별지 제 5 호 서식 뒷면]

변경사항기재란

변경일자	변경구분	변경내용	처리일자	확인기관	확인기관장인

(별지 제 1호서식)

연쇄화사업 양도·양수 승인신청서				처리기간 45 일
양 도	① 법인명		② 지정번호	
	③ 대표자		④ 자정년월일	
인 원	⑤ 소재지		⑥ 사업지역	
	⑦ 법인명		⑧ 소재지	
양 수 인	⑨ 대표자		⑩ 사업자등록번호	
	양도·양수사업			
도·소매업진흥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양도·양수하고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
양도자 ① 양수자 ②				
시·도기사 귀하				
구비서류				수수료
1. 양도·양수 사용서 1부				없음
2. 양도·양수 계약서 사본 1부				
3. 양수자의 출자부동산 정례 및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각 1부				
4. 양수자의 재무제표 1부				
5. 양수자의 사업계획서 1부				
62				

부	도	평	오	●	요
방	법	자	료	제	권
파	장			특	설
		별	세	회	권(설명)

분류기호 문서번호	38014-669 (전화: 731-6212)	기안용지 (전화: 731-6212)	시행장 특별취급
보존기간 수신처 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(3).1. 3년	28	
시행일자	87.6.26		
보 조 기 관	금융위원회 금융기획 기획	협 조 기 관	무
기안책임자	이니용		통계 통계관 6.26
경 유 수 신 참 조	수신처참조 신법마련	발신명의 시장	발송인
세부	연세화사법과 변경사항신고 간접에 관한 윤리자강지침 1. 금융부록 38014-1320 (87.6.19) 및 38014-346 (87.4.1) 호의 관련임 2. 위 관련내호로 기재한 연세화사법과 변경 사항 신고 하거나 지정모집 검토 학인 요령을 협장과 같이 일부보완(변경) 나찰하나 동법부록(87.6.19)에 속한 것으로 할 것 가. 대표자변경 신규지정검토 학인 요령과 동일 나. 기타)변경사항 078		

· 신규 리깅 시와 동일하게 하기 (만 실질 차운
을 진단할 때는 냉각)

· 차운금은 중량 나죽(등기부 등불 등)에 의한
개체감로

참고: 연세화사 업자 리깅 오전 적적기준 멀접률 0.79

수신자: 신주 1317

연쇄화 사업자 지정 요건 적격 기준 및 검토요령

번호	지정 요건	적격 기준	검토 요령	검토 확인기관	종합검토 확인기관
1	자본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통업 실질자본 기준 (신규 및 대표자변경) · 등기부상 자본의 총액금 (기타 변경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공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요령에 의함 · 관련 증빙서 (법인 등기부등본) 	실질자본 진단 기관(공인회계사)	시 구
2	점포				
	가. 점포의 이증가맹 및 사업자 등록 여부 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세사무처리 규정 (국세청 훈령)에 의거 다른 연쇄화 사업자의 가맹점포로 신고된것 (이증가맹)과 부가가치 세법에 의거, 사업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것은 부적격점포로 처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고(등록)서류 및 기타 비자료에 의하되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	세무서장(점포 소재지관할)	시 구
	나. 세무서 조사 사항이 외의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업태, 규모, 소유주 가맹 계약등이 시장법령 및 이 고시에 적합할것 소비자구판장(농협 신협등 비영리법인의 판매장, 특정기관 또는 업체의 구내매점 성격의 점포등)은 부적격 점포 로 처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련증빙서 및 현장실사 결과에 의함 	구	시

3	보관시설 가. 자기소유 인 경우	부동산등기법에 의거 자기명의로 등기되어 있는것	관련증빙서 및 현장 실사 결과에 의함	구	시
	나. 타인소유 인 경우	1년이상 임차계약이 되어 있고, 동 임차 권이 부동산등기법 에 의거, 등기된 것에 한함	관련증빙서류 및 현장 실사 결과에 의함	구	시
4	운송장비	50% 이상 자가소유일 것 타인소유의 것은 자동 차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사용계약을 체결된 것에 한함	관련증빙서 및 현장 실사 결과에 의함	구	시
5	판매사	대한상공회의소에 판매사등록을 필한 자로서 3월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 된 자	관련증빙서 및 현장 실사 결과에 의하되 필요시 관할세무서 에 소득세 납세사실 여부 조회	구	시

대한민국

상공부

유통 28014 - 1320 (503-9456) 1987. 6. 19.

수신 서울특별시장

제목 연쇄화사업장 변경사항 신고처리에 따른 질의(회신)

1. 상공 28014 - 0176 ('87. 6. 5)에 의한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.

2. 지정요건의 확인에 있어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출된 증빙서에 의한 개략검토등 시.도의 판단에 의하여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.

3. 따라서 사장범령 및 이에 의한 운영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귀시가 귀시의 사정에 맞도록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

「원활한 협력과 협조로」

수령일	1987. 6. 19.	부록	기준	파악	○
제작자	3969	제작일	제작장	제작장	○
제작자	3969	제작일	제작장	제작장	○



주신 공부

상공부 장



민원 처리

처리기한

문유기호
문서번호

1805-28014
0176

보증기간

임수: 준임수.
10. 5. 3. 1.

주식자
보증사실
시행일자

부
주
기
제

상공과제 "전계"

상경과제

기수책임자

이 쇄용

기안용지

(전화: 731-6311)

시행상
특별취급

26

수

위
조
기
판

증명과제
전계
【전계는 상당히 변경되었을
때문】

문서통제

증명
증명

증명
증명

상
수
임
자

각안참

로 2014. 6. 11.
의

제
부

연세화사 업자 변경사항 신고 처리에 따른 질의

(311. 1. 1)

수신

상공부장관

참조

유통산업과장

제목

같은건

1. 유통 28014-514 (87. 3. 11) 호 몇 종을 산업 28014

-1243 (87. 6. 3) 호의 관련입니다.

2. 연세화사 업자 변경사항 신고 처리 시에도 지정
요건을 확인하지 되었는지 그 확인 절차에 따른
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화되어 민원처리증인

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화되어 민원처리증인

감안하니여. 조속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질의사항

1). 성공부고의 제87-8호(87.3.14) 제8호와 1

항 중 “이미 드디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”로 되었으나
기변경 등기 후 신고하였을 때 처리절차

2). 통고의 제8호와 제2항의 지정요건 확인 절차

통고의 제3호와 제2항 버리 제6항의 규정을 준용
해야 되는지 여부

3). 위 규정을 준용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활용
방법 (예로자 변경만 규정되었음) 및 기타 지정요건
검토 확인 절차

3. 아울러 동변경 사항 신고에 따른 신청서식 및
처리기간도 정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1. 배민홍기부 등본 1부

2. 신청공문 4봉 1부 끝

(3.2.18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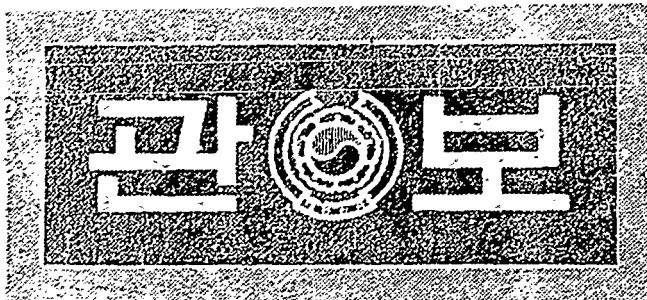
주신 종로구청장

084

대한민국정부

발행 총무처 (별점 720-4331)

-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-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- 비자용관보는 5년간 보존한다.



제10608호 1987. 4. 10 (금)

의사

○ 인사발령 3

고시

○ 법무부 고시 제48호·제19호(국적상실)	5
○ 통지자인부 고시 제87-13호(무인단<분단> 및 연단의 최고판매가격)	8
○ 문화체육부 고시 제692호(나동진조물작성)	10
○ 철도청 고시 제9호(철도소운송임연회의 일반수요직합성기준)	11
○ 전파법 구.신고시 제256호~제261호(형식검정 허가기기 인증번호부여)	11
○ 기술기밀제국과 과학기술제23호(기술의 접촉<은비설치>허가)	12
○ 특수기기 제11호(특수설비 허가)	12
○ 무기세 신정고시 제187호(무신작어가)	12
○ 무산개선정고시 제188호~제198호(선박국허가에 관한고시 증개정)	13

공고

○ 과학기술지광고제87-78호(기술용역업등록취소)	15
○ 과학기술처광고제87-79호·제87-80호(기술용역업등록)	15
○ 과학기술처광고제87-81호(기술용역업등록사항변경)	15
○ 과학기술처광고제87-82호(기술용역업등록취소)	16
○ 과학기술처광고제87-83호·제87-84호(기술용역업등록)	16
○ 과학기술처광고제87-85호(기술용역업등록사항변경)	16
○ 관세청 공고제87-63호(1987년도 관세사시험시행계획)	16
○ 공업전용청 공고제87-458호~제87-460호(KS표시허가)	17
○ 국립공업시험원 공고제87-5호(직산식기술관련미더형식승인)	18
○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광고제15호(드로공사계획)	18
○ 서울세관청 광고제800호(전기통신공사업 양도양수인가)	19
○ 제주지방해양항만청 광고제13호(공유수면점용<공작물설치> 허가의 무양도양수허가)	19
○ 무산검체무서 광고제18호(사업자등록말소)	19

입찰공고

○ 조달청 대차 광고제87-61호~제87-64호(조달물자<대차>구매위탁공고)

(이면 계속)

국 28

회	국 28						
팀	국 28						

1201-4A 1987. 12. 18 출판

120×268 판문용지 54.8 g/m²

내유지

2.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 후보자의 선별
3.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자에의 파별과 제부여
4.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자에 대한 지도·감독
5.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의 변경 및 일시 귀국의 승인
6.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
7. 제 2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보고서의 접수
8. 제 3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선발
9.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훈련의 위탁 실시에 관한사항
10. 제 34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훈련기간의 연장·단축 및 훈련목적 변경의 승인
11.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인서귀국 승인
12.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전문가의 일시 귀국 휴가의 허가
13.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전문가의 경우에 준용되는 제 10 조·제 16 조·제 18 조·제 20 조 및 제 2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
- ② 사료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 16 조중 "다음 자호의 권한"을 "다음 자호의 권한과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중 일부 관리양과의 무산물인 사료(미강을 제외한다)의 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권한"으로 한다.
- ③ 초지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 19 조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 1. 제 2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진공 허가(지·도지사가 적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외한다).
 - ④ 영관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31 조(권한의 위임) 상공부장관은 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3 조 및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자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·군·군수·구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1. 영전개발의 허가·허가의 취소 및 계발의 정지

2. 업전 또는 철연식기기제작에 의한 업 또는 창수제조의 허가·허가의 취소 및 제조의 정지

3. 영의 재제 또는 가공의 허가·허가의 취소 및 재제 또는 가공의 정지

⑤ 시장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6 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상공부장관은 제 2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자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 14 조제 1 항·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화사업자의 지정·직정의 취소 및 지원의 중단

2. 법 제 18 조제 1 항 및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

② 제 2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연세화자장자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관한 공고

③ 상공부장관은 법 제 2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사의 자격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.

⑥ 광업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92 조제 1 항에 제 1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제 88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대리인 신임신고의 수리

⑥ 전설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53 조제 1 항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 49 조제 2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전선부장관의 권한 중 일반전선업자·특수전선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

⑩ 광동위생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6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3 086